C - 45 - 2012

- (5) 발파구간 인접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발파허용 진동 치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(6) 암질의 변화구간 및 발파시방 변경시에는 발파전 폭력, 폭속, 발파 영향력 등의 조사목적으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발파후 암질판별을 기준으로 하여 발파방식, 시방 등의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.
- (7) 철도, 기존 지하철, 고속도로, 건축구조물 등 기존 구조물의 하부지반 통과 구간의 굴착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- (가) 발파의 경우 시험발파에 의한 진동영향력에 대하여 정밀검토를 하여야 하며 상부 구조물의 진동의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발파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(나) 발파의 경우에는 발파시방을 준수하여야 하며 풍화암반 등 연약암반 및 토층구간은 발파를 중지하고 수직·수평보링 등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암질판별에 의한 굴착시방을 변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보강공 법을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에 의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① 무진동 파쇄공법
 - ② 쉴드공법
 - ③ 언더피닝, 파이프루프 등 보강 및 보조공법
 - ④ 포아폴링공법
 - ⑤ 프리그라우팅공법
 - ⑥ 국부미진동 소할발파
- (다) 언더피닝, 파이프루프 등 보강 및 보조공법의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공중 안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① 보강구간의 정밀지질조사, 지하매설물 등의 사전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지반지지력구조 계산시 통과차량, 지진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.